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06
----------	------

발의연월일 : 2020. 7. 20.

발 의 자 : 임이자 · 박대수 · 조경태
정진석 · 송언석 · 김형동
김석기 · 金炳旭 · 김성원
이명수 · 이주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근로금지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건조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계 전반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업장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지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아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보건조치의”로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른 근로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즉시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였거나 이동한 장소 주변의 작업을 중지시키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내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등을 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근로자는 자신이 감염병환자이거나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였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보건조치의-----

--.